## 가정폭력 처리 요령

가정폭력이란?	○ 가족구성원(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x) 사이 신체·재산·정신적 피해 ※ 근래 동거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사실혼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판단	
현장출동	○ 112시스템 신고이력, 재발우려가정, 임시조치 여부 등 APO시스템 확인 ○필요 시 순찰차 2대 이상 출동 및 돌발적인 상황을 고려 <u>안전 최우선</u> - '칼' 관련 신고내용이 있을 경우, 방검복·방검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 必	
현장 도착·조사	-응급조치- 1호제지·분리·수사. <sup>2호</sup> 피해자 보호시설 및 <sup>3호</sup> 치료기관 인도, <sup>4호</sup>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, <sup>5호</sup>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안전조치 청구 가능함 고지  ○ '현장 출입·조사권 및 처벌조항' 고지 후 출입 (거부시 500이하 과태료)  - 개문 시 돌발상황을 염두해두고 진입  -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  - 아동이 함께 있을 경우 '아동학대' 확인 필요 → 아동학대조사표 작성  - 재발우려/ 긴급 시 피해자(법정대리인) 신청 또는 <u>경찰관 직원으로 긴급임시조치</u> 결정 ※ 긴급임시조치 결정에 협조적이지 않고 반항 시 공무집행방해 검토  -(진급)임시조치  1호퇴거 등 격리, <sup>2호</sup> 주거지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, <sup>3호</sup>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근금지사, 의료기관 위탁, 유치장, 구치소 유치,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	
사건 접수	○현행범인체포, 긴급임시조치 통합판단조사표, 응급조치보고서	○법원 임시조치 위반  1년↓징역, 1천만원↓벌금 형사처벌- <u>현행범인 체포 가능(가폭법 제63조②항)</u> ○법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 2년↓징역 2천만원↓벌금 형사처벌- <u>현행범인 체포 가능(가폭법 제63조①항</u> )
	○ <b>발생보고</b> 긴급임시조치 통합판단조사표, 응급조치보고서	○경찰 긴급임시조치 위반 2년↓징역, 2천만원↓벌금 형사처벌- <u>현행범인 체포 가능(가폭법 제63조①항)</u>
피해자 보호	○ 피해자 권리 안내서 배부 必 ○ 응급조치 中 <i>2, 3, 4, 5호</i> 고지 및 확인	
검거	○ 체포 시 물리력대응 절차 준수 및 안전하게 검거  - 단순 수갑 사용 시 물리력사용보고서 x , 상처 등이 발생 시 물리력사용보고서o  - 경력을 지원 받아 검거, 경찰관 안전 확보 및 피해자, 피의자 보호  - 통합당직실 인치 후 사건보호관 지정 후 관리	